

의안번호	제 226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269 회)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4 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
----------	-----

제출연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삭제(제22조제2호)
-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규정 삭제(제22조제3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조 별	현 행	개 정(안)
제22조	<p>제22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 52조제 2항에서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와 같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생략) 5. (생략) 	<p>제22조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7호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18>

(1호 ~6호 생략)

6.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③항 ~ ⑥항 생략)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1호 ~ 9호 생략)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

2.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3. 삭제 <2005.5.18>

③삭제 <2005.5.18>

조례개정 근거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의 결

제 목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

관련기관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결정사항 관련기관의 장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내용을 상위법령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과 일치되게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2007. 11. 19

위원장	송 철 호	위 원	이 유 정
위 원	강 정 혜	위 원	이 재 충
위 원	박 종 렬	위 원	정 노 찬
위 원	신 철 영	위 원	최 상 립
위 원	이 권 상	위 원	함 인 선

(시행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2007. 11. 20)